

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

의안 번호	31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

- 발행대상 :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
- 발행금액 : 3,500억원
- 필 요 성 :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
(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예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정성민(☎2133-8033)